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9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11일

발 의 자 : 문종철 의원(1명)

찬 성 자:이승로·박운기·김동율·김인제

김진철·장흥순·유 청·남창진 김혜런·김광수(도봉)·김용석(도봉) 김미경·이순자·저철수·박기열

최조웅 · 성백진 의원(17명)

1. 제안이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의 기능이 과거 화재나 지진 등재난에 대비한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실습, 어린이안전관람 등 생활에 필요한 폭넓은 안전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현행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향상 및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방재교육"기능을 생활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으로 개정함.(안 제2조)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월 1일·2일" 로 규정 되

어진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1호)

- 다. 2007. 10. 1.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 이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5조제5항)
- 라.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순오기 "이용시간·회수"를 "이용시간·횟수"로 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2]

서울특별시 시민인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방재교육"을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1월 1일·2일"을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회수"를 "이용시간·횟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가상체험을 통한 방재교육 을 수행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생략〉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2일 2.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5조 (이용방법 등) ① ~ ④ 〈생략〉	제5조 (이용방법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⑤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회수 및 입장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그 제한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별첚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첚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원 문종철